

2011년 10월 제25호
ISSN 1976-6041(On-Line)

치안정책리뷰

POLICE SCIENCE INSTITUTE REVIEW

발행인 김영식 편집인 조요셉 전화 (031)285-0183 FAX (031)620-2989

권두언

현재에 머무르지 말고 지속적 혁신의 길로 나아가길 관동대학교 이영남 교수

연구특집

강제송환 탈북자 현황과 구금시설 고찰 치안정책연구소 김윤영 연구관
집회시위의 합법촉진 활동방안 치안정책연구소 최경환 연구관
신임교육생 경찰관서 실습제도 개선방안 치안정책연구소 이춘삼 연구관
스페인내 이민자 범죄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고찰 치안정책연구소 신동욱 연구관

연구소 소식

치안정책연구소
POLICE SCIENCE INSTITUTE



■ 권두언

현재의 경찰발전에 만족하지 말고 지속적인 혁신의 길로 나아가길

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부 이영남 교수



대한민국 경찰은 1945년 광복이후 정부수립을 돕는 건국경찰로서, 6·25 동란에는 호국경찰로서, 그리고 남북 대치 상황에서는 안보경찰로서 국가적 운명과 궤를 같이하면서 올해로 창경 66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 경찰은 분단 국가라는 어려운 내외적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높은 수준의 안정적인 치안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고, 그 결과 세계 어떤 국가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높은 치안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가 자랑할 만한 눈부신 경찰발전에도 불구하고 21세기를 시작하는 현대사회는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새로운 경찰상을 필요로 하며, 또다시 경찰조직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즉 과거의 공급자와 제공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생산력 중심에서 고객만족 중심으로, 양 중심에서 질 중심으로, 기능조직 중심에서 절차조직 중심으로, 보호·통제의 시대에서 무한경쟁 시대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부합되는 새로운 경찰관리 이념과 실천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시대적으로 중요한 혁신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고객지향적 정부만이 국가 경쟁력을 갖게 되는 시대가 되었고, 관리이념도 조직중심에서 인간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고 최근 들어 인본주의도 행정, 경영, 정책(환경친화, 신노사관계) 등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물론 그 동안 경찰도 치안환경의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질서유지의 규제자로서 보다는 능동적인 치안서비스의 제공자로 다원화된 사회에서 효과적인 치안유지를 가능케 하는 고객으로서의 주민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명제 하에 노력하여 왔으며 우리 스스로가 자부할 만큼 발전을 한 것도 사실이다. 특히 “국민과 현장에 눈높이를 맞추겠습니다” 라는 모토로 국민과 함께하는 경찰 워크숍을 개최, “경찰, 생각의 틀을 바꿔야 국민의 신뢰 얻어”라는 명제로 명사들을 초청해서 경찰개혁 토론회를 갖는 것 등은 경찰의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며, 청탁관행 근절 및 인사정의 실현, 경찰관들의 복지개선, 學·警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기틀 마련 등은 경찰행정의 발전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전념하는 아동·여성보호 1319팀 출범, 고속도로 대형교통사고·폭설 등 재난대비, 인명피해 최소화하기 위한 고속도로 응급구조 시스템 구축, 초등학교 주변 근무 배치를 위한 아동안전지킴이 발대식 등은 경찰서비스의 질적 개선 노력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국민에게는 고객지향적이고, 경찰조직차원에서는 인간중심적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경찰조직의 열정을 느끼게 한다.

경찰공무원은 경찰행정의 급속한 환경변화가 필연적으로 전문화와 서비스제공자로서 경찰공무원에게 다양한 능력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또한 경찰행정의 개혁 역시 경찰공무원에 의해서 이러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나아가 경찰발전을 위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점에서 개혁의 대상이자 주체가 된다. 따라서 경찰은 지금까지 이룩한 경찰발전에 만족하지 말고 지속적인 혁신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성을 갖는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의 경찰역할의 몇가지 변화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윤리교사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부와 첨단 테크놀러지만이 선진국의 조건은 아니다. 국민이 무질서와 범죄로부터 불안하지 않아야 선진국이다. 아무리 잘살고 기술이 풍부한 나라라도 밤거리를 마음놓고 다닐 수 없고 법질서와 사회기강이 예사로 취급된다면 선진사회라 할 수 없다.

흔히 선진사회의 상징으로 경찰이 꼽힌다. 경찰은 정부의 얼굴이요,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을 대변한다. 경찰을 움직이는 정부라 하기도 하고 거리의 재판관이라 일컫는 것도 그 때문이다.

신뢰받는 공권력은 경찰의 힘이자 생명줄이다.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는 유럽, 일본을 비롯,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 서고 있는 싱가포르 등도 산업경쟁력 못지않게 경찰을 통한 공권력의 투명성 제고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이를테면 선진국은 경찰에 대한 투자를 국민생활 안정과 사회기강 확립을 위한 일종의 사회간접자본 차원에서 대처하고 있다. 선진국일수록 경찰은 단순한 범인 검거, 단속의 법 집행자가 아니라 윤리교사로서의 기능을 강조한다. 경찰의 궁극적 존재가치는 엄정한 공권력 행사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둘째, 국민의 친구로서 역할을 하여야 한다. 우리 경찰은 이제 국민과 관계에서 친구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출발과 역사가 일본경찰을 가장 많이 닮은 한국경찰에 그대로 타산지석이 될 수 있는 일본경찰의 개혁과정을 보자. 일본 경찰은 종전후살을 깎아내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군정을 맡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군국주의의 바탕이 세제와 교육 그리고 경찰”이라고 규정, 경찰의 환골탈태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국가경찰을 지방 자치체경찰로 바꾸고 국민들에게 혐오감을 주었던 군국주의 시절 정보담당 특별고등계 경찰(특고경찰)을 모두 파면시켰다. 정치사찰을 금지했고, 고반(교번)으로 통칭되는 주재소와 파출소를 중심으로 “경찰은 국민의 친구”를 제1의 목표로 추구했다. “파출소 문은 항상 열어둘 것”, “항상 기립자세로 주민을 대할 것” “민원인 보다 먼저 전화를 끊지 말 것” 등 철저한 근무 수칙을 세웠다. 심지어 파출소를 인형의 집처럼 꾸미고 각종 마스크트를 걸어두는 “패션화”도 시도했다. 이런 노력이 50년 가까이 쌓여 일본 경찰은 오이상(이봐씨)에서 모시모시상(여보세

요씨)으로 변신한 것이다. 일본경찰의 이 같은 대변신 뒤에는 일선 경찰 개개인에서부터 중앙정책에 이르기까지 눈물겨운 노력이 있었다.

셋째, 군림하지 않는 서비스기관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이제 고객지향적인 정부만이 국가 경쟁력을 갖게 되는 시대가 되었다고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경찰조직이 고객지향적인 정부기관으로 변신하기 위해서는 경찰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이에 대한 고객(customer)의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경찰서비스에 대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경찰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하고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주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을 높여야 한다.

넷째, 엄격한 법집행자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선진국 경찰은 야누스의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선량한 시민에게 더없이 온순한 친구로 다가서지만 일단 법의 한계를 넘어서면 가차없이 회초리를 든다. 경찰은 질서의 마지막 보루이자 공권력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철저한 정치적 중립이 따라야 한다.

실제로 우리 경찰은 화염병이 난무하는 난폭한 시위대를 진압할 때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가며 늘 방어적일 때가 많다. 이러한 경찰태도는 시위대가 다치기라도 한다면 과잉진압이라는 여론의 화살이 즉각 경찰에 쏠리게 되는 민주화 과정의 사회분위기에 적응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경찰이 명백한 위법사실에 대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하고도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원인이야 어디 있던 법치주의 사회의 경찰로서 부끄러운 일이며 우리 경찰이 꼭 극복해야 할 핵심과제이다.

우리는 한국전쟁으로 거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늘날 이토록 발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한 민족이다. 경찰도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만큼 발전한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껏 이룬 발전에 안주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혁신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세계에서 인정하는 국민의 사랑받는 경찰의 제1국가가 되기를 바라며 또 그것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대한민국 경찰에 큰 믿음으로 진심으로 다하여 지지를 보낸다. [PSI](#)

■ 책임연구과제 요약

강제송환 탈북자 현황과 구금시설 고찰

김윤영 연구관

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연구실

문제 제기

최근 언론매체들은 중국체류 탈북자들이 체포되어 강제 복송되는 사건사례를 빈번하게 보도하고 있다. 중국 체류 탈북자는 최소 2만 명에서 최대 5만 명 선으로 추정되고, 국내입국 탈북자는 2011년 10월 현재 2만 3천명을 넘어서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주민들의 탈북행렬은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 등 북한체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지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실정에 놓여있다. 우리정부는 그동안 국외체류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중국은 여전히 탈북자 문제를 북한과 처리할 문제로 보고 국제기구나 제3국의 관여를 거부하며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법체류자로 규정하여 체포한 후, 북한으로 강제 송환시키고 있다. 이 글에서는 탈북자들이 체포된 후 수용되는 구금시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북중 당국의 탈북자 정책

북한은 탈북자 문제를 책임지고 보호해야 당사국이지만 중국체류 탈북자들의 보호문제를 외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화국’을 배반한 배신자로 낙인 찍어 강제송환한 후 노동단련형이나 노동교화형, 정치범 수용소 강제수용, 공개처형 등의 정치적 탄압을 통해 체제유지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별히 정치적 이용 가치가 있는 자는 다시 한 번 김정일 부자에게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명분하에 대남 공작원으로 양성시킨 후 탈북자로 위장시켜 남파시키고 있다. 중국은 1960년 북한과 체결한 ‘조·중 밀입국자범죄인상호인도협정’과 1986년 체결한 ‘국경지역업무협정’에 따라 탈북자들을 월경(越境)죄를 범한 불법체류자로 규정하여 검거한 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고 있다. 탈북자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거나 지

원하다 적발되면 형법의 ‘국경관리방해죄’로 처벌 받는다. 즉, 중국은 탈북자 문제를 자국의 사회안정에 미칠 영향과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불법월경자’인 강제송환 대상으로 규정하여 중국동포와 탈북자 격리, NGO 활동가와 탈북자와의 격리 등을 통해 탈북자 문제를 비공식적, 비공개적 방법으로 희석시켜 국제여론을 무마시키고 있다.

강제송환 현황

탈북자들이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되면 국경 변방 부대로 이송되어 조사를 받고 일정기간 대기하다 북한의 국경지역 부위부에서 송환하여 기초적인 조사를 한 후, 탈북자 출신지역 보안서나 국가안전보위부(이하 보위부)로 이송하여 죄의 경중에 따라 정치범 수용소(관리소)나 집결소, 노동단련대, 교화소에 수용한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재탈북하여 국내로 입국하기도 한다. 강제송환 탈북자 규모에 대해 중국과 북한은 공식적인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그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없으나, 중국 국무원 산하 국제연구소, 미국의 난민위원회(USCR), 중국사회과학원, 유엔기구와 미국 NGO,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대한변호사 협회, 국가인권위원회, 통일연구원, 언론매체 등에서 발표한 강제송환한 탈북자 자료를 종합하여 분석해 보면 최소 수 만 명에서 최대 7만 10만 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계산은 1990년 말 중국 체류탈북자 10-30만 명 중 30% 정도가 강제 송환된 규모라 할 수 있다.

탈북자 구금시설

중국의 탈북자 구금시설

중국 공안당국은 탈북자를 체포하면 체포기관 지역의 구금시설에 감치하여 조사와 구호를 실시한 후, 북한으로 강제송환 전까지 국경지역의 변방부대 내

의 구금시설(구류장)로 이송하여 수감하고 있다. 중국 국경지역의 변방부대로는 중국 길림성에 위치한 도문변방부대와 용정변방부대, 화룡변방부대 그리고 신의주 국경선과 맞댄 요녕성의 단동변방부대가 있는데, 중국에서 수감된 변방부대 위치에 따라 북한으로 이송되는 국경지역 보위부가 결정되고 있다. 즉, 중국의 도문변방부대에 구금된 탈북자들은 온성군 보위부로, 용정변방부대와 화룡변방부대에 구금된 탈북자들은 회령시와 무산군 보위부로 강제송환된다. 그리고 단동변방부대를 거쳐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은 신의주시 보위부로 인도한다. 탈북자들이 중국의 변방부대에 체포된 경우에는 변방부대 구류장이 최초 수용시설이 되지만, 국경과 멀리 떨어진 내륙에서 체포된 탈북자는 중간 경유 시설을 거쳐 국경선 변방부대로 이송한다.

북한의 구금시설

먼저, 보위부 구금시설이다. 북한은 중국변방부대 구금시설에서 탈북자들을 강제송환하면 국경지역 보위부에서 1차 조사를 한 후, 보위부의 특별취급 대상으로 판명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출신지역 도 보위부이나 시·군·구역·연합기업소 보위부 구류장으로 이송하여 강도 높은 조사(예심)를 한 후, 정치범 수용소(관리소)에 수용하여 강제노동에 동원하고 있다. 1990년 중반 이후 탈북자가 급증하자 탈북자를 비롯한 종교인이나 정치범을 강제 수용하는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 중에 있다. 현재 6개의 정치범 수용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이곳에 약 15-20만 명의 강제송환탈북자 및 정치범을 수감하고 있다.

다음은 보안부 구금시설이다. 첫째, 인민보안부(경찰청) 산하 인민보안서(경찰서) 수사과에서 운영하는 구류장은 심문 중인 ‘피소자(피고인)’와 확정판결을 받은 ‘피심자(피의자)’를 교화소로 보내기 전에 임시 수용하는 시설이다. 강제송환 탈북자 중 보위부 취급대상을 제외한 자들은 출신지역 보안서 구류장으로 이송되어 최장 90일까지 조사(예심기간 중에도 구류장에서 생활)를 받은 후 사법처리 유무가 결정된다.

둘째, 북한의 노동단련대는 감옥과 수용소의 중간

형태의 구금시설이다. 여기에는 단순탈북자, 도강자, 탈북혐의자 등을 거주지 시·군 소속 로동단련대에 15일에서 6개월간 수용하여 무보수로 강제노동을 시킨다. 수용능력은 100~200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셋째, 북한은 탈북자들이 급증하자 함경북도 청진과 양강도 해산 등지에 집결소를 설치하여 탈북자를 임시로 수감하고 있다. 이들은 출신지역 담당 보안원이나 보위부원이 호송 올 때까지 짧게는 2-3일 길게는 6개월까지 집결소에 대기하면서 채석장이나 농장에서 강제노동을 한다. 청진의 도 집결소의 경우 비법월경자(도강자)와 강제송환 탈북자들이 많을 때에는 1,500여명이 수용되었다고 한다.

넷째, 교화소는 주로 재판을 통해 3년 이상의 형이 선고된 강제송환탈북자 등 범죄자를 수감하여 강제노동과 교양을 통해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교화(教化)하는 교정시설이다. 대개 도 단위로 1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수용자들은 주로 농장, 건설, 봉제, 신발, 가죽가방 제작, 석탄과 금광 채굴 등에 동원되어 강제노동을 한다. 교화소 주변에는 자급자족용 농장이나 채소밭 등이 산재되어 있다.

맺는 말

북한체제의 변화가 예상되고 남북통일시대가 구호가 아닌 현실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남북한 체제와 해외를 모두 경험한 탈북자들은 통일시대의 중요한 통일자원이 될 수 있다. 때문에 우리는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되어 강제 복송되는 탈북자 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고 동포애와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보호해야할 당위성을 요구받게 된다. 최근 다양하게 제기되는 국외체류 탈북자 보호방안들은 탈북자 관련 국가와 국제기구, 탈북자 관련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실행 의지는 물론 국민들이 함께 할 때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제 강제송환 탈북자 문제는 탈북자 개인의 행복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정착시키는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좌우될 수 있다. 오늘도 북한 동포들은 생존과 인간적인 삶을 위해 목숨을 걸고 탈북을 시도한 후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적 한계를 넘어 국내 입국을 꿈꾸고 있다. [PSI](#)

■ 책임연구과제 요약

집회시위의 합법촉진 활동방안

최경환 연구관
치안정책연구소 사회안정대책연구실

들어가며

최근 경찰은 집회시위관리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적극적 합법촉진을 추진하고 있다. 집회시위 자유의 적극적 보장을 위한 합법촉진에 주력하기로 한 것이다. 평화적인 집회시위시에는 경찰기동대도 배치하지 않기로 하였다.

경찰의 합법촉진활동이 그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연한 집회시위 관리기법이 운용되어야 한다. 경찰이 활용할 수 있는 집회시위 관리기법으로 폴리스라인 설치, 경력과 장비 융합 전술 사용, 집회시위 관련 장비 개발, 차벽 설치, 평화시위구역 설정 등 다양한 관리기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경찰의 집회시위 합법촉진 추진방향

경찰의 합법촉진 추진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계속 확고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경찰은 합법집회는 적극적으로 최대한 보장하고, 훈련과 교육을 통해 법집행 기준에 따른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불법집회 역시 공권력을 통해 엄정 대응하여야 한다.

둘째, 경찰은 집회참가자 및 국민 모두가 쉽게 알 수 있는 집회시위 단계적 대응기준을 만들어 집회시위 개최 전에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앞으로 경찰관의 전담 대응이 이루어질 경우를 대비해 효율적인 경력 운용과 함께 보다 철저한 대응체계를 갖추어야만 한다.

넷째, 경찰은 선진적인 치안기법 및 집회시위관리기법 도입 등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다섯째, 경찰은 집회시위와 관련한 대국민 치안정보서비스를 확대하여야 한다.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경찰이 최근 제시한 합법촉진 방침과 물리력 사용기준 등에 대한 국민적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여론조사와 공청회, 세미나, 언론 기고 등을 통한 전략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블로그, 스마트 폰, 페이스북, 트위터 등 뉴미디어 활용을 통한 정보제공을 확대 추진하여야 한다.

여섯째, 합법촉진을 위한 가장 중요한 통로는 집회시위단체와 국민 등과의 의사소통을 확대하는 것이다.

집회시위단체의 합법촉진 활동

집회시위의 합법촉진을 위한 최선의 방안은 집회시위단체가 법대로 집회시위를 진행하는 것이다. 집회시위단체가 술선수범하여 법질서를 확립하려는 인식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집회시위현장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집회시위현장의 기초질서 확립이 중요하다. 집회시위 단체가 먼저 집회시위 현장에서 작은 기초질서부터 지키고 실천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준법의식의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집회시위단체를 중심으로 경찰과 국민 모두 집회시위현장의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작은 일부부터 실천해감으로써 합법촉진활동은 확대되어질 것이다. 집회시위현장에서 집회시위단체와 경찰 측은 MOU를 체결함으로써 채증으로 인한 인권시비도 방지할 수 있다.

집회시위단체는 소통의 시대에 한 주체로서 집회시위를 통한 의사전달 이외에 여러 다양한 통로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을 할 기회를 만들고 실천하며,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해야 할 것이다.

집회시위를 통해 알리고자 하는 주장을 이체는 집회시위현장보다는 각종 대중매체를 통해 활용하여 알리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집회시위대의 시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언론에 보도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보장한다면, 결과적으로 시위대가 자신들의 주장을 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폭력적인 시위로 변질될 가능성을 미리 차단케 된다.

국민의 집회시위 합법촉진 참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폭력시위 방지를 위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참관단 및 다양한 대화 채널 추진으로 평화적 집회시위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독일의 질서유지인제도나 미국의 법률적 옵서버제도는 시위대와 경찰간의 완충역할을 하는 데에 그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

국민통합 차원에서 국민은 경찰과 집회시위 참가자 사이의 중재자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여야 한다.

국민 스스로 주체가 되어 경찰과 집회시위 단체간의 협력체제를 강화하여, 갈등요인이 발생할 경우 서로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갈등요인에 대한 해소방안을 찾고, 당사자간에 지속적인 대화와 화해를 하도록 함으로써 갈등이 집단민원이나 집단시위로 확대되지 않도록 먼저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이다.

국민은 집회시위시 경찰이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집회의 자유를 인식하고, 경찰력을 사용하는지 감시하며, 시위자에게도 경찰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보호자임을 인식토록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여야 한다.

국민의 가장 좋은 합법촉진 활용방안은 인터넷이나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를 통해 적극적인 의견을 표명하며, 여론을 주도해가는 것이다.

맺은 말

경찰의 합법촉진 집회시위관리로의 전환은 공정한 법 집행자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며, 인권을 중시하는 보호자로서 경찰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경찰은 집회시위 전과정에 걸쳐 설득과 준법유도, 현장방송을 통한 합법촉진활동을 전개하는 등, 집회시위측과 대화와 협력으로 상호 신뢰관계를 형성코자 하고 있다.

집회시위의 합법촉진 추진은 경찰뿐만 아니라, 집회시위단체, 국민 등 세 주체간에 충분한 합의와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만 가능하다. 집회시위의 합법촉진은 경찰의 관리 이전에 집회시위를 주도하는 단체나 개인이 앞장서서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집회시위의 합법촉진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회 각 분야에서 국민 모두가 모든 문제를 법적 질서 내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초고속정보시대에 언론 및 인터넷, 디지털 카메라, 스마트폰 등 뉴미디어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모든 집회시위 현장이 그대로 실시간 전송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회시위단체도 이제는 집회시위의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 그리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국민 또한 화합과 소통의 시대에 걸맞게 경찰과 집회시위단체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 주체로서 그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서로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의 폭을 확장시켜야 한다. [PSI](#)

■ 책임연구과제 요약

신임교육생 경찰관서 실습제도 개선방안

이춘삼 연구관
치안정책연구소 정책기획연구실

연구 목적

경찰청 교육과 의뢰(2011.4.18)로 ‘신임 교육생 경찰관서 실습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하게 되었다. 향후 경찰청에서는 신임 순경 경찰관에 대한 교육을 1년까지 연장하면서 현장실습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지만, 신임 교육생에 대한 법집행 권한 부재 및 신분보장 미흡 등의 문제로 소극적 현장실습 운영 등 실무능력 배양에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선진 외국사례연구를 통해 교육생에 대한 법집행 권한 확보, 신분보장, 교육기간 연장, 현장실습 강화 방안 등 경찰관서 실습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신임 경찰관 교육 현황 및 문제점

<신임 경찰관 교육훈련 과정>

신임 경찰관(순경)은 현재 중앙경찰학교에서 전담 교육 중으로 신임 교육과정의 기간은 일반 남자 순경 공채 기준으로 34주로 총 1,190시간이며, 합숙 방식의 교육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짧은 교육기간 및 현장실습 비중>

현장실습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나, 총 6주간의 실습은 실무적응 훈련기간으로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외국경찰의 경우 많은 국가에서 1년 이상의 신임경찰교육기간을 설정하고 있고, 실습의 비중도 상당히 높은 점을 알 수 있다.

각국의 신임경찰 교육기간

국가	교육기간	실습기간
미국	LA 8개월, 워싱턴 6개월	통상 600시간 / 교육 후 14주의 현장훈련제도(FTO)
영국	24개월	12주(IPLDP) / 32주~104주 견습제도
프랑스	12개월	3개월
독일	24~36개월	9개월
일본	15, 21개월	7~8개월

※ 신임순경 교육훈련의 효과성 제고방안(김수정, 2009) p.18 재구성

<교육생의 신분상 제약>

우리나라 신임 순경 교육은 선교육-후임용 체제로 신분상 제약이 따를 뿐 아니라 교육성과 도출에도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현행 교육생은 실습기간 중 신분이 단순 교육생으로 전의정보다 못한 민간인 신분으로, 실습 중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로 보호될 수 없고, 신체장애 발생시 임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 교육생들은 경찰관으로서의 신분보장이 안 된다는 점을 교육훈련 과정에서 불만사항 1위(78.6%)로 응답(2008, 김무형)

<열악한 복지 문제>

신임순경 교육수당으로 월 895,200원이 지급되고 있으나, 정식 경찰관의 보수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수준으로, 열악한 교육수당을 지급받으며 불확실한 교육생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 교육생의 사기 저하 요인이 되고 있다.

외국 경찰의 교육훈련제도

<교육기간 중 법집행 권한>

영국과 일본의 신임 순경 교육생은 일정 교육 시점 이후에 단독으로 직무집행도 가능하다. 영국은 자치치안의 전통성에 따라 법집행 권한 부여에 유연성을 보이며, 일본은 선임용-후교육 제도를 택하고 있어, 교육 입교시부터 경찰관 신분을 보장받으며, 권총수갑-경찰봉도 휴대한다. 하지만, 독일·프랑스는 정식 경찰관과 합동으로 법집행권한을 행사한다. 프랑스의 경우 교육생은 형소법상 사법경찰리가 아니므로 법집행 관련 업무 참여시 반드시 정규 경찰관과 함께 근무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는 교육기간 중 교육생에 대해서는 법집행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경찰학교 이수 후 14주간의 현장훈련관 제도(FTO program)를 마쳐야 정식 법집행권한을 부여받으며, 테이저 건 사용과 관련해서도 경찰관이라 할지라도 테이저 건 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만 이를 지급한다고 한다.

<신분보장 정도>

미국은 경찰관 임용 후 일정기간을 실무수습 기간으로 명시하고, 이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해고가능하므로, 임용 이전인 교육생은 신분보장이 더욱 안 된다. 영국의 경우에는 견습기간 중 수시로 면직시킬 수 있는 권한을 임명권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일본은 先임용 제도로 경찰학교 입교와 동시에 경찰관의 신분을 보장한다. 독일의 경우는 조정부 공무원 신분으로, 최종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정식경찰관으로서의 신분을 부여하고, 프랑스는 12개월 교육 후, 1년 동안의 수습순경과정을 마친 후에 순경으로 정식 임용된다.

<보수 정도>

미국은 경찰교육생에게는 보통 순경 월급의 70~80%가 지급된다, 영국의 경우 교육생의 월급은 경찰관의 2/3 수준으로 지급되나, 여타 보상은 동일하게 보장된다. 일본은 초임 순경과 급여수당에 있어 거의 차이가 없다. 독일은 순경의 40% 수준에서 보수를 지급하나, 기혼자와 미혼자, 연령에 따라 급여를 차등 지급하고, 의료비는 전액 지원한다. 프랑스는 초임 순경의 80% 수준에서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

신임 경찰관 교육훈련제도 개선 방안

<교육과정 연장>

외국 경찰의 경우는 교육기간이 통상 1년 이상이며, 많은 경우에는 3년까지도 교육기간을 두고 있다. 하지만, 우리 경찰의 34주의 교육기간은 다양한 경찰업무와 지식을 습득하기에는 짧은 시간으로, 현행 34주에서 최소 12개월로 교육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제한적 법집행 권한 부여 검토>

신임 교육생에게 법집행권한을 영국, 일본처럼 단독으로 부여하는 경우는 경찰관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을 경우에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의 경우, 교육생에게 단독으로 법집행권한을 부여할 경우, 이로 인한 ‘인권침해’ 등 문제가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와 같이 교육기간 중 일체의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면, FTO프로그램 등 경찰학교 이수 후 현장실습 프로그램이 없는 우리의 경우, 실습제도 자체가 무의미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독일, 프랑스의 경우와 같이 현장 지도경찰관의 지휘감독 하에서만 법집행

권한을 제한적으로 행사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교육 종료 후 일선 배치시 FTO 프로그램을 통한 현장실습강화와 부적격자 배제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육생 신분보장은 현행 제도 유지>

교육생 신분보장과 관련해서는 일본과 같이 先임용 체제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식 임용시까지 신분이 보장되는 경우는 없다. 견습제도(영국), FTO프로그램(미국), 긴 교육기간과 여러 번의 중간평가(독일) 등 엄격한 검증 절차를 거친 후에야 정식 경찰관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시보임용 시점을 앞당겨 경찰관으로서의 신분 보장 및 보수 증가 등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김무형, 김수정)이 제기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시보 임용시 정식 경찰관으로 모든 경찰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법집행권한 부분에 있어 문제 발생 소지가 있으며, 시보임용 후 탈락률이 낮은 점도 문제이다. 따라서, 시보임용은 현행과 같이 경찰학교 과정을 모두 통과한 후에 임용하도록 유지하되, ‘현행 임용 예정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한다’는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개정(호봉 인상 등)하여 교육생 사기를 진작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의료비 지원, 기혼·미혼자, 연령(30세 이상) 차등 보수 지급 방안 및 교육생을 위한 임시 신분증 발급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책제안 및 결론

교육생에 대한 법집행 권한 부여는 그 나라 국민의 경찰관에 대한 인식 정도 등 여러 가지 제반 상황을 고려하고, 국민에 대한 인권침해 요소가 없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생에 대한 법집행 권한 부여는 제한적 권한 부여로 신중하게 접근하고, 관련 여론 수렴·공청회 개최 등 절차적인 요소도 반드시 거쳐, 졸속추진·인권침해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선, 체포수사 외 非강제적 분야에서부터 교육생의 법집행 권한 행사에 대한 국민신뢰도를 확보 후 점진적으로 권한을 확대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와는 별도로, 열악한 교육생 복지에 대한 해결을 통해, 교육생이 자부심을 가지고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PSI](#)

■ 자유기고

스페인내 이민자 범죄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고찰

신동욱 연구관
치안정책연구소 생활안전대책연구실

들어가며

최근의 자료들에 의하면 스페인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이민자의 유입이 많은 국가라고 한다. 스페인내 거주등록 외국인 규모는 1998년 60만명 가량이던 것이 2009년에는 5백6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스페인 통계청). 10년 동안 약 9배의 가파른 증가규모를 나타내고 있으며, 자연히 스페인 전체 인구의 12%를 점하게 되었다. 스페인 사회과학연구소(C.I.S)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스페인 국민들은 이민 혹은 이민자 문제를 스페인 사회에 존재하는 가장 주요한 문제점들 중 실업, 경제·정치문제 등에 이어 손꼽았다(2010년 3월 조사결과). 이민자에 대한 우려는 크게 이민노동자들로 인한 내국인의 실업 증가 또는 저임금으로 인한 현지 노동자의 임금저하 등 경제적 측면과 이민자들이 일으키는 범죄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스페인을 비롯한 이민 노동자의 유입이 많은 사회에서 가장 폭넓게 퍼져있으며, 이민자들에게 가장 큰 사회적 차별을 유발하는 미신 중의 하나는 이민 수용국에서 발생하는 범죄들의 불균형적 비율을 이민자의 책임으로 보거나, 이민자들의 범죄를 이민에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부산물로 보는 시선들일 것이다.

한국사회도 스페인과 마찬가지로 이미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각종 뉴스매체를 통해 체류외국인들과 관련한 범죄 소식을 빈번하게 접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문화적으로 성숙한 우리 사회에서 더욱 위험한 것은 이민자 그 자신들의 범죄가 아니라, 아마도 존재 할지 모르는 이민자들에 대한 선입견과 차별, 이로 인해 더욱더 이민자들을 범죄로 빠져들게 만들지 모르는 우리사회의 막연한 두려움이 아닐까 생각한다. 여기서는 스페인내 이민자들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분석을 통해 이민자와 범죄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스페인내 외국인 범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스페인 통계청의 형선고자 통계를 보면 범죄로 인해 형(벌금 이상)이 선고된 외국인(형선고자 통계는 국적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여기서 외국인은 이민자로 볼 수 있는 등록외국인과 여행 등 단기체류목적의 외국인 모두를 포함)은 2000년 7천명에서 2008년 5만8천명으로 8배 증가하여 같은 기간 등록외국인이 5.7배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형선고 외국인의 증가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전체 형선고자 중 외국인의 비율이 29.7%로 전체 인구대비 외국인 비율을 두 배 이상 상회하여 상대적으로 외국인이 스페인 국민에 비해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는 일반적 인식이 생겨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외국인 형선고자의 출신지별 분포는 북남미, 유럽연합, 아프리카 순이었고 이는 유럽연합, 북남미, 아프리카 순인 등록외국인의 출신 대륙별 분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북남미 출신의 형선고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 범죄의 유형으로는 공공안전에 대한 범죄, 재산범죄 및 반경제범죄, 상해 순이었다. 공공안전에 대한 범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교통안전에 관한 죄가 외국인 형선고 사건의 40.9%를 차지하여 실제 외국인이 범하는 가장 많은 범죄는 교통과 관련한 범죄로 이는 어느 누구나 범죄의 고의를 갖지 않고서도 과실로 범할 수 있는 범죄로 공공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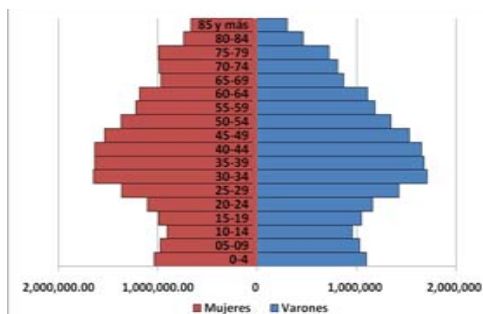
그러나 두 번째 하위유형인 공중보건에 관한 죄는 마약이나 그 유통에 관한 죄로 외국인 전체 형선고 사건의 7.4%(5,344건)를 차지하고 있으며, 절대건수로도 스페인 국민이 범한 동일 범죄(5,288건)보다 많았다. 즉, 스페인내 마약관련 범죄의 절반이상을 외국인이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범죄는 전체 범죄 중 그 비중은 적더라도 공공안전에 민감

한 영향을 끼치며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야기하는 주된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 범죄 중 두 번째로 많은 재산범죄 및 반경제범죄를 보면 절도(외국인 전체 범죄의 4.9%), 강도(8.8%), 지적재산권·상표법 위반(1.7%)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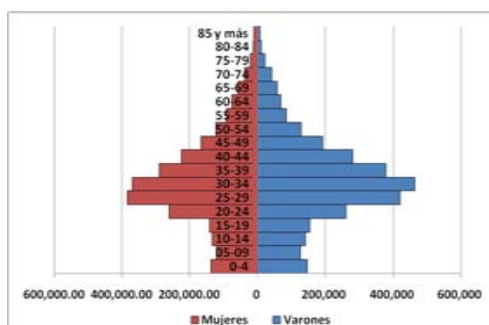
형선고자의 나이와 성별에 따른 분포를 보면 18~30세 사이에 스페인 형선고자의 42%, 외국인의 51.2%가 집중되어 있다. 20~29세 연령층의 인구분포가 스페인 국민의 13.75%, 등록 외국인의 23.5%를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청년층의 범죄율은 인구비율에 비해 약 2배 이상 높다고 볼 수 있다. 형선고자의 성별분포는 스페인 국민과 외국인 모두 남성이 91%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즉, 국적에 관계없이 청년·남성이라는 요소가 범죄자의 주요한 인구학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스페인 국민과 이민자의 연령, 성비 분포를 살펴보면 스페인 국민들에 비해 외국인의 남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민자의 경우 20~39세 사이의 젊은 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범죄자의 대표적인 인구학적 특성인 청년·남성이라는 요소가 스페인내 이민자의 인구·사회학적 구성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 스페인 국민의 인구피라미드 >



< 스페인내 외국인의 인구피라미드 >

맺으며

스페인에 이미 고령화·저출산 사회로 진입하여 전체 인구에서 청년·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줄고 있는 반면, 저임금,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스페인내 이민자의 인구구성은 청년, 남성층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단순 인구비율대비 범죄율의 비교는 마치 30대 청년그룹과 60대 노년그룹의 범죄율을 비교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민유입국인 선진국은 점차 노령화되고 젊은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늘어갈 것이다. 따라서 이민자와 범죄와의 관계에 대한 사회의 우려도 깊어 질 것이다. 하지만, 이민자들이 저지르는 범죄의 절대숫자가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도 내국인 범죄에 비해 적고, 스페인 청년층의 범죄율 또한 이민자의 범죄율과 비슷하다는 점을 알아야한다.

다만, 이민자 범죄의 대부분이 교통과 관련한 범죄로 공공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만 마약과 관련된 범죄는 그 절대숫자는 적지만 절반이상이 외국인에 의해 범해진다는 점과 이러한 범죄는 종종 국제범죄조직과 결부된다는 점에서 이민자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체감안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도 스페인과 마찬가지로 이민자 범죄는 상대적으로나 절대적으로나 점점 증가할 것이고, 그렇다면 경찰을 포함한 우리 사회가 이민자범죄와 관련해서 집중해야하는 것이 청년 이민자들에 대한 범죄예방프로그램과 마약과 같은 중요범죄의 근절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PSI](#)

※ 본 기고문은 지난 2010년 스페인 살라망카 대학 사회정책대학원에 제출한 석사논문 “El estado de la seguridad publica de Espana”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임.

아시아 국제법무학회와의 학술 교류 협정 체결

치안정책연구소(소장 김영식 경무관)는 2011년 8월 10일 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아시아 국제법무학회(회장 이학춘 동아대학교 교수)와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아시아 국제법무학회는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국제공조체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래치안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 향후 양 기관은 연구 자료의 교환 및 연구 활동에 있어서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아주대학교 ITS대학원과 학술 교류 협정 체결

치안정책연구소(소장 김영식 경무관)는 2011년 8월 18일 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아주대학교 ITS대학원(원장 오영태 아주대학교 교수)과 학술 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아주대학교 ITS대학원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지능형교통체계 전문교육의 메카로 첨단교통 및 IT기술 분야의 이론 및 실무능력을 겸비한 전문가를 배출하고 있다.



치안논총(27집) 발간 배포

치안정책연구소는 2011년 8월 16일에 2010년도 용역연구과제 보고서 중 현안 치안문제와 관련 있는 5편에 대하여 치안논총으로 발간하여 경찰관서 및 관련기관에 1,500부 배포하였다. 치안논총은 치안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연번	연구 과제명	연구자
1	영국 미국의 집회시위 관리 기법 국내도입 방안 연구	이주락 경기대 교수
2	방법용 CCTV 사양표준 및 효율적 관리방안	박현호 용인대 교수
3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사업의 저탄소 감축 청정개발 효과 연구	김진태 연세대 교수
4	사법개혁관점에서 비리본 수사효율성 제고 논의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한상훈 연세대 교수
5	민간조사관 활동이 경찰업무에 미치는 영향	이창훈 아칸소대 교수

용역연구과제 발표 및 토론회

치안정책연구소는 8~9월중 총 9회의 용역연구과제 발표회의를 개최, 경찰청 담당부서 담당자 등을 토론자로 참석하여 활발한 토론을 통해 연구 성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다

연번	연구과제명	연구자
1	개도국 사이버수사기법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최정호 한국해양대 교수
2	다양한 교통수단의 공존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선 연구	명묘희 도로공단 박사
3	지역경찰 순찰근무의 효율성 검토로 적정 소요인력 산출	이상원 용인대 교수
4	경찰의 범죄예방 및 수사목적의 휴대전화 위치정보 파악의 허용과 그 한계	박희영 국제형법 연구소 박사
5	경찰 CCTV장소-용도별 장비규격 및 영상통합관리 방안 연구	유대현 한세대 교수
6	통일대비 치안인프라 구축 방안	고성호 통인교육원 교수
7	치안정책연구소 발전방안 연구	임준태 동국대 교수
8	경찰상 암수범죄 추정방법 및 최소화 방안 연구	이창훈 한남대 교수
9	아동 성폭력 전문가 참여제 성과 및 발전 방안	박종선 백석대 교수

연구관 동정

◆ **조요셉 연구부장은** 2011년 9월 23일 성결대학교 신학대학원 100여명을 상대로 “탈북자 남한정착과 통일문제”란 주제로 특강하였다.

◆ **권태형 연구관(정책기획연구실)은** 2011년 8월 10일과 11일에 경찰대학 경정기본교육과정(162기) 교육생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의 이해”란 주제로 강의하였다.

◆ **유동열 연구관(안보대책연구실)은** 9월 30일 (금) 국방부에서 합동참모본부(군사지원본부) 주관으로 열린 「2011 국방발전 심리전 세미나」에 초청되어 “북한의 대남사이버심리전 실태와 대책”이란 주제로 발표하였다.

◆ **김남선 연구관(교통대책연구실)은** 2011년 10월 7일, 국토해양부 한국건설기술평가원의 자격심사를 거쳐 “건설 교통 분야 국가 R&D 사업의 평가위원 및 자문위원”으로 임명되었다. 10월 17일, 도로교통공단에서 주최한 “제2차 군포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연구” 최종 보고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에 참석하여 자문하였다.

◆ **김학신 연구관(생활안전대책연구실)은** 2011년 9월 28일 서강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에서 “디지털 범죄 수사와 기본권 보호”라는 주제로 정보통신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였다.

연구소 인사

<전출>

정은식 총경은 9월 28일 경기 제2청 생활안전과장으로 발령되었고, **김혁 경감**은 9월 16일 경찰청 수사국으로 발령되었다

<전입>

신동욱 경감은 9월 5일, 연구소 생활안전대책연구실로 업무지원 발령 되었다. [PSI](#)

- ▶ ‘현장제언’에 글을 보내주신 분들 중 채택된 분들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 드립니다.
- ▶ 현장에서 느낀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 앞으로도 일선 경찰관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로서 치안정책연구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치안정책리뷰는 치안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www.psi.go.kr).

치안정책리뷰 편집팀

편집팀장 : 김학신 연구관

편집위원 : 김지환, 조은순, 이춘삼 연구관

치안정책리뷰 편집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동1길 29 경찰대학교 치안정책연구소 (446-703)

- 전화: 031-285-0183 (경비) 61-2989
- e-mail: webmaster@psi.go.kr

치안정책리뷰를 보신 후 편집실 앞으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추첨하여 소정의 사은품을 드리며, 치안정책연구소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내실 내용》

- 이름, 근무지, 연락처, 이번 호에서 좋았던 기사
- 치안정책리뷰에서 다루기 원하는 내용
- 기타 치안정책리뷰 발간에 관련된 의견

《보내실 곳》

- 인터넷 : webmaster@psi.go.kr
- 내부망 : 경찰대학교 치안정책연구소 김지환

【공 지】

전국 현직 경찰관 중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분은 학위논문을 1부 보내주시면 치안정책 발전의 연구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 치안정책연구소 소개

치안정책연구소는 급변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 우리 경찰이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대한민국의 치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생산해 내는 산실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경찰연구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경찰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찰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비전 수립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연구진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연구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치안관련 최고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최신 국내외 연구자료의 DB(데이터베이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치안정책연구 토대의 확충과 해외 치안정책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등에도 힘을 기울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치안행정 수요에 부응하는 적실성 높은 연구성과 창출로 치안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명실상부한 한국경찰의 싱크탱크(Think Tank)로서 치안정책분야의 세계 최고 연구기관으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PSI](#)

◆ 치안정책연구소 부서별 업무

부서	담당 업무
정책기획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장기 치안수요 예측 및 대응방안 수립 기획정책개발·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감사정보통신·홍보 분야 등에 관한 연구 총무행정·보수·후생복지 등에 관한 연구
사회안정 대책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정보활동 및 국내 사회안정 대책 연구 경찰 경비활동 및 대테러 대책 연구
안보대책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일을 대비한 치안분야의 연구 남북교류 및 북한이탈주민 관리방안 연구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연구·분석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 및 발전방안 연구
생활안전 대책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죄예방 및 소년·여성범죄에 관한 연구 경찰외근, 민간경비 업무 등 중장기 생활안전 대책 연구
교통대책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찰교통의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교통업무전반의 효율성과 안전성 제고를 위한 연구
범죄수사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찰수사의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범죄분석 및 범죄수사에 관한 연구
수사구조 개혁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장기 수사구조개혁 방안에 관한 연구 수사경찰제도 및 수사절차 개선에 관한 연구 형사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연구
운영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서, 보안, 인사 등에 관한 사항 회계, 청사유지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연구소 홈페이지 및 자료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연구소내 서무와 다른 연구실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연구소 중장기 발전계획 및 홍보업무 연구계획 수립·관리 및 세미나 개최에 관한 사항 간행물의 인쇄·배포에 관한 사항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등 섭외 업무

치안정책연구소 조직도

